

의안
번호

125

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6. 0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125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5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5. 25.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」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5조(실태조사)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나. 제6조(지원사업)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지원법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4. 13. ~ 2023. 05. 03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5조제3항은 1인 가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고, 연령, 성별, 지역 및 정책수요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따라서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과 지원계획 설계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지원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, 이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